

2024년 통계청 청년인턴 채용(단기형) 공고

통계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통계청장

1. 선발예정인원 (14명)

지원 코드	채용분야	선발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채용 시 우대사항
단기형01	통계지원	14	통계청 (대전광역시)	○ 통계학 관련 분야 전공자 ○ 관련 자격증 보유자(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서류전형기준의 자격증 참고

가.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4.5.13. ~ '24.8.12.(예정)(3개월 이내)
* 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 수) 78,880원/1일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월 206만원 내외)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 코드	채용 분야	부서	선발 인원	담당 업무(예정)
단기형01	통계 지원	통계정보플랫폼과	14	○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정제 및 전처리 - 통계용어 설명메타, 보고서, 보도자료 등 수집 - Q&A, FAQ 콜센터 데이터 정비, 분류 및 재가공 - 통계작성기관 보고서, 보도자료, 기타 외부자료 수집 등

※ 담당 업무는 근무 부서 내에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통계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통계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 취업자가 아닌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정당한 사유는 제외) 이력이 없는 자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통계학 관련 분야 전공자, 자격증 보유자

※ 서류전형기준 참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

3.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합격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합격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14명	3배수

* 서류전형기준: 1. 자기소개서 점수, 2.우대요건(전공, 자격증) 점수, 3.기타 점수, 4.가점

구분	평가기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점수										
관련 분야 전공	- 통계학 관련 분야 전공자										
자격증	<p style="text-align: center;">자격증</p> <p>-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SQL전문가(SQLP)</p> <p>-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SQL개발자(SQLD), 빅데이터분석기사</p> <p>-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2.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급~3급 동일), e-test, ITQ, 전산회계1급, FAT1급</p> <p>※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p>										
기타 점수	<p>※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 관련 증빙서류 제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항 목</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저소득층</td> <td>-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부모가족 세대주</td> </tr> <tr> <td>다자녀</td> <td>- 다자녀(주민등록상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td> </tr> <tr> <td>북한이탈주민</td> <td>- 북한이탈주민</td> </tr> <tr> <td>장애인</td> <td>- 장애인등록증소지자</td> </tr> </tbody> </table>	항 목	내 용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부모가족 세대주	다자녀	- 다자녀(주민등록상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항 목	내 용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부모가족 세대주										
다자녀	- 다자녀(주민등록상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정성평가점수(자기소개서)가 높은 순 > 기타점수가 높은 순 > 전공 및 자격증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위의 기준으로도 구분이 안 될 경우, 선발 최대인원이 초과되더라도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시험 평정 방식은 각 평정요소마다 배점을 부여하여 면접위원이 각각 채점하고, 점수 합산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 ※ 세부 면접시험 진행 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로 결정

다.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관련 가점은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5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채용 일정

- 채용공고: 2024. 4. 5.(금) ~ 4. 16.(화)
- 원서접수: 2024. 4. 5.(금) ~ 4. 16.(화) 18시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2024. 4. 24.(수)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2024. 4. 24.(수) ~ 4. 25.(목)
- 면접시험일: 2024. 4. 26.(금)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4. 5. 8.(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ansk>) > **채용정보** > **합격·공지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2024. 4. 5.(금) ~ **4. 16.(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apple6272@korea.kr
 - ※ e-mail 제목 및 파일명은 반드시 **(청년인턴_단기형)성명** [예: (청년인턴_단기형)홍길동]으로 기재
 - 문의처: 042-481-2007(통계청 운영지원과)

나.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 ③ 우대 및 가점 요건 관련 각종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보육가구/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시 주의사항 >

- 제출 서류 중 ①, ② 서류는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응시원서에 작성한 우대 및 가점 요건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기타 서류전형 증빙서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필수 제출)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필수 제출)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11조 ①에 따라 가족 채용을 제한합니다.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운영지원과(☎042-481-2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1호>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목록 순서대로 제출(증빙서류 포함)

통계청 청년인턴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i>미기재</i>	성명		지원 코드	단기형01	채용 분야	통계지원
------	------------	----	--	----------	-------	----------	------

목 록	제출	미제출
< 필수사항 >		
1. 응시원서(자필 서명) 1부		
2. 자기소개서(자필 서명)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 서명) 1부		
< 선택사항(해당자에 한함) >		
4. (전공) 학위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등) 사본 (부)		
5. (자격증) 자격증 사본 (부)		
6-1.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부모가족 세대주 증빙서류 1부		
6-2.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1부		
6-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6-4.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1부		
7. (취업지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 지원코드: 단기형01 채용분야: 통계지원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2001.10.15. 성별: 여
- ④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해당란에 ✓ 표시
- 공고문을 참고하여 채용분야별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중 해당사항을 표에 알맞게 기입
※ 우대요건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청년인턴 채용관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 23, 24조, 시행령 제18, 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